2 (제221회 - 제4차 부록)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6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제5항)

- 위원의 외부인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하는 단서조항 신설
- 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 대상에 반영하는 내용 추가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안 제4조제5호 및 제4조제6호)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 11.10 ~ 11.30)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외부인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 단, 외부인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군 소속 재산세과세표준 및 토지거래업무 담당공무원, 국세청재산세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 임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 1명과 서기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사람중심! 경북세상!"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공시법 등 감정평가 선진화 3법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3102(2016. 9.0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16.01.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로 분법·공포되었고, 이와 함께「한국감정원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3. 2016.09.01. 법률 시행에 맞추어 관련 하위법령(대통령령 3건, 부령 3건)을 붙임과 같이 제·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대통령령	부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한국감정원법(제정)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제정)	-

* 제·개정된 법령 내용은 관보 제18835호(그2)(2016.08.31.)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특히, 종전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준용 등 일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5. 따라서, 각 시·군·구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여 소관 조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